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521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52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6 선고 2020가단298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고민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11. 10.

판결선고 2021. 12.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6. 선고 2020가단298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